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사대상 및 절차

[검사대상]

해외에서 수입(병행수입 포함)하는 방송통신기자재, 전기용품 등 ICT 제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검사절차]

각 세관에서 통관 전 ▲ 전파인증 여부,
▲ KC표시 부착 여부 등을 검사하고 통관 여부 결정

전파인증 받은 기자재(해외)		미인증 기자재(해외)		면제대상 기자재	
↓		↓		↓	
시험성적서(MRA* 등), 외관도, 부품배치도 등의 검사(세관)		사전통관 신청 (이천센터)	반송· 폐기	전파인증 면제 신청(이천센터)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적합)	↓(부적합)	↓		↓	
통관	통관보류	사전통관 신청서류 확인		면제신청 제출서류 확인	
	↓	↓		↓(적합)	↓(부적합)
	시정조치 후 통관 및 반송·폐기	통관		통관	통관보류
		↓			↓
		60일 이내 적합성평가 (서류 제출)			시정조치 후 통관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1단계 체결 국가 : 미국, 캐나다, EU, 베트남, 칠레
2단계 체결 국가 : 캐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1966년 효율적인 전파관리와 새로운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전파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 ICT 국가 표준의 제·개정 그리고
국제 표준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
Tel. 031-644-7530~5(전파시험인증센터)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

KC 전파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ICT기기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란?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기 간 혼·간섭 예방을 위해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를 받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었는지 시험을 통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유선기기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정보기기 PC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
	무선기기 휴대폰, 무선LAN 무선조정용 완구 등		전기기기 세탁기 전자렌지 청소기 등
	전동기기 모터사용 완구류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조명기기 LED등기구 안정기내장형램프 안정기 등

적합성평가 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적합성평가 표시(KC)가 없는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Tel. 031-644-7460~5
- ※ 중앙전파관리소 www.crms.go.kr
Tel. 080-700-0074

※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 등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전파법 제90조)

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 불법 제품과 달리 안전합니다.
-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파 영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주변기기에 간섭 및 오작동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품에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를 구입할 때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00000
기자재 명칭: 000000
모델명: ABC-000000
제조년월일: 0000년 00월
제조사 및 제조국가: 00전자/한국

R-CS-ABC-XXXXXXXXXXXXXXXX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처리 절차

[신청]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 전기용품 등 ICT 제품을 설계단계부터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전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를 신청

- 고시*의 분류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 신기술 제품 등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잠정인증으로 신청 가능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처리 절차]

적합인증은 제품의 시험 및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서 교부, 적합등록은 시험 후 서류심사 없이 적합등록필증 교부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처리 절차	↓	↓	↓
	지정시험기관 시험	지정시험기관 시험	자기시험 * 제조사 자체 시험 가능
	↓	↓	↓
	인증신청 (전파시험인증센터)	등록 (전파시험인증센터)	등록 (전파시험인증센터)
	↓	↓	↓
	인증심사 (전파시험인증센터)	* 심사 절차 없음 ↓	* 심사 절차 없음 ↓
	↓		
	적합인증서 교부	적합등록 필증 교부	적합등록 필증 교부
대상 기기	휴대폰, 전화교환기 등	컴퓨터, 모니터, 전기기기, 조명기기, 전동기기 등	계측기, 산업용 플랜트설비, 산업용 컴퓨터 등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이천) : TEL. 031-644-7530~5

*적합인증,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전파시험인증센터 / www.emst.go.kr)

※ 적합성평가에 대한 사항 위반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시정조치 등(전파법 제58조의4, 제84조, 제86조, 제90조, 제92조)